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재난의 유형에 지반침하 추가〉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3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8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15.
3. 회부연월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3조제1호나목).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유형에 “지반침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제1항 및 제34조의5제10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u>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u>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나. ----- <u>화재·붕괴·지반침하·폭발·교통사고</u> ----- ----- ----- ----- ----- ----- ----- ----- ----- ----- -----

현행	개정안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 13. (생략)	----- ----- 2. ~ 13. (현행과 같음)

최근 자동차 도로, 공사현장 등에서 지반의 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위협도 가중되고 있음.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957건으로 연평균 191건에 달하고, 지역별로 경기도(197건), 광주(122건), 부산(85건), 서울(81건), 전북(7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월별로는 특히 우기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지역별 지반침하 사고 현황(2019년~2023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전체	193	284	142	177	161	957
서울	13	15	11	20	22	81
부산	15	29	17	8	16	85
대구	3	2	1	2	4	12
인천	8	20	2	1	2	33
광주	20	55	13	6	28	122
대전	20	20	8	9	9	66
울산	1	2	5	3	-	11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체
세 종	1	2	-	1	-	4
경 기	53	47	35	36	26	197
강 원	5	30	5	10	18	68
충 북	6	24	2	9	10	51
충 남	2	5	5	4	-	16
전 북	6	7	14	40	3	70
전 남	5	7	7	5	4	28
경 북	1	14	12	16	8	51
경 남	32	5	5	4	9	55
제 주	2	-	-	3	2	7

* 자료: 행정안전부

<월별 지반침하 사고 현황(2019년~2023년)>

월 별	전 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수	957	33	29	70	73	96	138	130	241	61	34	30	22

* 자료: 행정안전부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반침하”를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으로 정의¹⁾ 하고,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해로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 13. (생 략)

인한 위해 방지 및 공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유형 중 하나로 “붕괴”²⁾를 규정하고 있는데, “붕괴”의 사전적 의미³⁾는 ‘무너지고 깨어짐’으로 지반침하 현상 역시 붕괴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과 같이 붕괴와는 별도로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추가할 경우 중복 입법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사회재난의 발생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 붕괴는 “도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3) 표준대국어사전

재난”으로, 철로 붕괴는 “철도 재난”으로, 지하 건설공사장의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는 “사업장 재난”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만, 재난의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시행령 별표의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재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회재난 유형*>

국토교통부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

문 의 처

02)6788-5349